

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항상 중국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저희 은행에서는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 관련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,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금리인하요구권이란?

-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(가계용) 제3조(이자등과 지연배상금) 제9항, 은행여신기본거래약관 (기업용) 제21조(여신거래조건의 변경) 제3항에 의거 채무자인 고객이 본인(기업)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필요 시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. 다만,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
2. 대상 여신

-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(단,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제외)

3. 금리인하요구 사유

-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
- ①. 가계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취업, 승진, 재산증가 또는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. 기업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: 신용등급 상승,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금리인하 신청방법

- 신용상태 개선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대출상담 창구로 신청

5. 신청시기

- 금리인하요구 사유 발생 시 신청가능

6. 기 타

-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-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

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-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(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)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님께 통지드립니다.